

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·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(제24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
가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2호라목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"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.

- 1)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
- 2) 건축사, 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
- 3)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건축설비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
- 4) 건설기계기술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
- 5)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
- 6) 화공기술사, 화공기사, 화공산업기사
- 7) 가스기술사, 가스기능장, 가스기사, 가스산업기사
- 8)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
- 9)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
- 10)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

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2호라목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"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.

- 1) 소방안전관리학과(소방안전관리과, 소방시스템과, 소방학과, 소방환경관리과,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)
- 2)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)
- 3)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)
- 4)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,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)
- 5)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)
- 6)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)
- 7)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)부터 6)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

다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

제2호라목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"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"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
- 1)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공사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
- 2) 한국소방안전원,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
- 3)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
- 4)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

라.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,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·경력을 인정하고,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(기계, 전기)를 모두 인정한다.

학과 · 학위	구 분	소방기술분야	
		기계	전기
	· 소방안전관리학과(소방안전관리과, 소방시스템과, 소방학과, 소방환경관리과, 소방공학과, 소방행정학과)	○	○
	· 전기공학과(전기과, 전기설비과, 전자공학과, 전기전자과, 전기전자공학과, 전기제어공학과)	×	○
	· 산업안전공학과(산업안전과, 산업공학과, 안전공학과, 안전시스템공학과)		
	· 기계공학과(기계과, 기계학과, 기계설계학과, 기계설계공학과, 정밀기계공학과)	○	×
	· 건축공학과(건축과, 건축학과, 건축설비학과, 건축설계학과)		
	· 화학공학과(공업화학과, 화학공업과)		

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	소방시설설계업	전문	○	○
		소방시설공사업	일반전기	×	○
		소방공사감리업	일반기계	○	×
		소방시설관리업		○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자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 관련 기관(한국소방안전원 · 한국소방산업기술원 ·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)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			○	○
				○	○
				○	○

2.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

소방업체 구 분	기 술 능 力	자격 · 학력 · 경력인정기준		
소방시설 공 사 업	기계 분야	가.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)부터 7)까지, 9) 및 10)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	기계 · 전기분야 공통	
	보조 인력	나.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)부터 6)까지를 졸업한 사람	가.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서 제1호나목1)에 해당하는 학 과를 졸업한 사람	나.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 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
소방시설 설 계 업	전기 분야	가.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가목1) 및 8)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	다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 력이 있는 사람	
	보조 인력	나.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)를	라.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 는 경력이 있는 사람	마.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		<p>졸업한 사람</p>	<p>바.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
소방시설 관리 업	보조 인력	<p>가.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나.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·경력</p> <p>1)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</p> <p>2)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)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4)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5)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6)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p>	

3.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

가.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

1)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

등급	기계분야	전기분야
특급 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기술사 •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건축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화공기술사,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건축기사, 건축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화공기사, 가스기능장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	가스기사, 산업안전기사,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	
고급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시설관리사 • 건축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화공기술사,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건축기사, 건축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화공기사, 가스기능장, 가스기사, 산업안전기사,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건축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화공산업기사, 가스산업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화공기술사, 가스기술사 • 소방설비기사(기계분야)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건축기사, 건축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화공기사, 가스기능장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전기설비기술사 • 소방설비기사(전기분야)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	<p>가스기사, 산업안전기사,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화공산업기사, 가스산업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초급 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분야) 건축기사, 건축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화공기사, 가스기능장, 가스기사, 산업안전기사,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화공산업기사, 가스산업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분야)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2) 학력 · 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

등급	학력 · 경력자	경력자
특급 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

고급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•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초급기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비고

1.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.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위 표에서 "학력·경력자"란 고등학교·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

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위 표에서 "경력자"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.

4. "소방 관련 업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가.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

나.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

나.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

구분	기계분야	전기분야
특급 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고급 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 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초급 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호나목1)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)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•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제1호나목3)부터 6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)부터 6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제1호나목2)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)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--	--

비고

1.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.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"소방 관련 업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 - 가.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
 - 나.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
3.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.